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7234호, 2020.4.7. 공포, 2020.10.8. 시행)됨에 따라 결함 사실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할 결함 사실 통지 내용 및 방법 마련(안 제70조의2 신설)

- 1)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결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의 내용,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2(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)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
2.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 안내
3. 그 밖에 결함의 시정조치를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0조의2(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합 사실 통보) 법 제34조의2 제4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결합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 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</u> <u>2.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 안내</u> <u>3. 그 밖에 결합의 시정조치를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